

# 072

창업기업의 공장증설 시 부담금 감면

## 창업 '7년차'지만, 처음처럼!

“공장 증설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요?” 경기도 A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치한 K씨(창업 4년차)는 사세확장을 위해 인접부지 공장 증설을 추진하려 했지만, 막대한 개발부담금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선으로 K씨의 이 같은 고충은 해소됐습니다. 공장을 보유 중인 창업기업도 공장 증설 추진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최초로 공장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운영했으나 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K씨의 경우처럼 7년 이내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에도 부담금은 면제되고 인·허가 사항이 일괄 처리돼 신속한 공장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 • 창업 5~7년차 기업 증설에 따른

#### 부담금 약 245억원 면제

1,303업체가 약 245억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



#### 개선 전

공장을 처음 설립하는 창업기업만이 부담금 면제 대상

#### 개선 후

7년 이내의 창업자가 공장증설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허용해 공장 증설 시 부담금 면제  
'창업사업계획승인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 (중기청, '14.6월)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384)

# 073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이용을 통한 가치 재창출

## 비싼 저작물, 더 이상 고민 NO! 공공저작물이 있잖아요~

벽지 제조업체 H사는 벽지 문양 디자인을 위해 매년 디자인 업체에 외주를 주다보니 생산단가가 올라 매출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문화정보센터의 전통문양을 발견해 디자인에 활용해보려 했지만 저작권법 등 관련규제로 활용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전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H사와 같은 고충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보고서나 사진, 음악, 영상, 디자인 소스 등의 저작물입니다. 공공저작물 중 ‘공공누리’ 마크(OPEN)가 부착된 자료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www.kogil.or.kr>)에서 사진, 음악, 영상, 어문 등 종류별로 약 280만 건의 저작물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 ·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비용부담 절감 예상



**개선 전**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했음

**개선 후**  
공공누리마크가 표시된 공공기관의 저작물은 별도의 절차 없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문체부, '14.7월)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2)

# 074

소규모 식품가공업 허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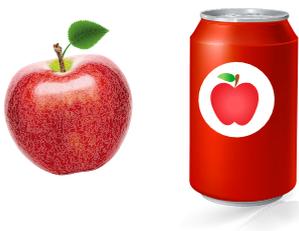
## 농사만 짓는 농촌은 이전 옛말!

“집에서 만들어 먹는 채소 즈이나 장아찌를 만들어서 팔수는 없대요. 가공식품 시설 기준을 맞추라는데, 농가에서 일일이 설비를 어떻게 들여 놓습니까?” 경북 K군에 사는 P씨는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간 협업을 통해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돼 지자체에 보급됐습니다. 이제 소자본 농가들도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채소 즈, 장아찌 등)을 제조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채소 즈, 장아찌 등)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으로 향후 3년간 약 183억원의 농가 소득 창출 기대



### 개선 전

농가의 소자본으로는 식품위생법의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식품가공업 창업이 힘들

### 개선 후

농가의 식품가공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완화

\*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식품(농산물 등)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허용. 공정 특성에 따라 내수성 재질 설비 예외 인정. 식수용 탱크도 급수시설로 인정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지자체 표준 조례·규칙(안)' 배포 (농식품부, '14.9월)

# 075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졌어요!

수중펌프를 생산하는 A기업은 창업한지 3년 된 회사입니다. A기업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려 했으나, 납품실적이 2건 밖에 없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창업 3년차란 이유로 납품실적을 면제받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달청이 각종 계약체결 시 지원하는 창업초기기업의 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창업초기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체결 시 납품실적 제출 완화, 전용물 등재, 2단계 경쟁에서 가점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창업 초기 기업이 납품기회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 • 창업 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 기대

약 1,000여개 이상의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개선 전**

창업초기기업의 인증범위를 창업 2년 이내 제조업체로 한정해 납품실적 제출 면제  
창업기업범위를 '제조'만 인정

**개선 후**

창업 2년 이내 기업의 납품실적 제출 면제 및 창업 2~5년 기업 납품실적 완화(3건 → 2건), 창업 5년 이내 초기기업에 2단계경쟁\* 가점  
창업기업범위를 '제조, 서비스' 모두 인정

\* 2단계경쟁 : 일정금액이상에 대해선 5개사 이상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적기납품,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조달청, '15.3월 시행)

문의 : 조달청 쇼핑기획과 (070-4056-7266)

# 076

청년창업가, 입영기일 연기로 경영연속성 보장

## “군입대 잠깐만요! 사업 좀 키우고 갈게요!”

“집에 도착한 입대영장에 도전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생 J씨의 하소연입니다. 3년 전 J씨는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CEO로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고는 미룰 수 없는 군입대로 인해 꿈을 잠시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8~24세 연령대의 초기 창업활동 지표가 '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는 대부분의男儿들이 이 시기에 군대를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창업을 미루거나 공부에 뜻을 없지만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J씨와 같은 예비 벤처기업창업가들을 비롯해 20대 초기에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들도 군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되는 등 청년창업가의 안정적인 창업활동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 군 미필 청년창업가의 안정적인 창업활동 기반 마련, 청년 창업 유도



### 개선 전

창업가 입영기일 연기 불가

### 개선 후

청년 창업가에 대한 입영기일 연기 제도 신설

대상 : 벤처기업(예비)창업가, 창업경진대회 3순위 이내 입상자로 창업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 (병무청, '14.2월)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5)

# 077

온라인으로 모든 유형의 법인회사 설립 가능

## 법인회사 설립, 집에서 클릭으로 끝!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관공서와 금융기관을 수차례 오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창업을 준비하던 J씨는 법인 설립을 위해 지자체, 세무서, 등기소, 4대 사회보험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유형의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인터넷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 운영됐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 조치로 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 회사를 설립할 때도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 • 창업자의 법인 설립 부담 완화



#### 개선 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주식회사 설립만 가능

#### 개선 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모든 유형의 회사(주식·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 설립이 가능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개편 (중기청, '14.12월)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62)